

신·중·개축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2019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목 차

I.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개요

1. 제도 개요	3
2. 주요 내용	4
3. 신청 절차	6
4. FAQ	11

II. 관련 규정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5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17
3.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22

I . 신 ·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개요

1

제도 개요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란? >

-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19년, 27%)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 ⇒ 공공기관 신재생설비 설치의무제도 시행('04.3월)
- ⇒ 의무대상 확대 : 학교('08.9월), 중·개축('09.3월)
- ⇒ 의무기준 변경 : 건축비의 5% 이상 → 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11.4월)
- ⇒ 의무대상 확대 : 건축연면적 3,000㎡이상 → 1,000㎡이상('12.1월)
- ⇒ 공급의무비율 확대 : '20년까지 20%이상 → 30%이상('14.4월)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시행령 별표2) >

연도	'11~'12	'13	'14	'15	'16	'17	'18	'19	'20~
공급의무비율(%)	10	11	12	15	18	21	24	27	30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 >

* 아래의 3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임

대상기관 (건축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납입자본금의 50%)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대상건축물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군방·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시설
대상건축물 연면적	신축·증축·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00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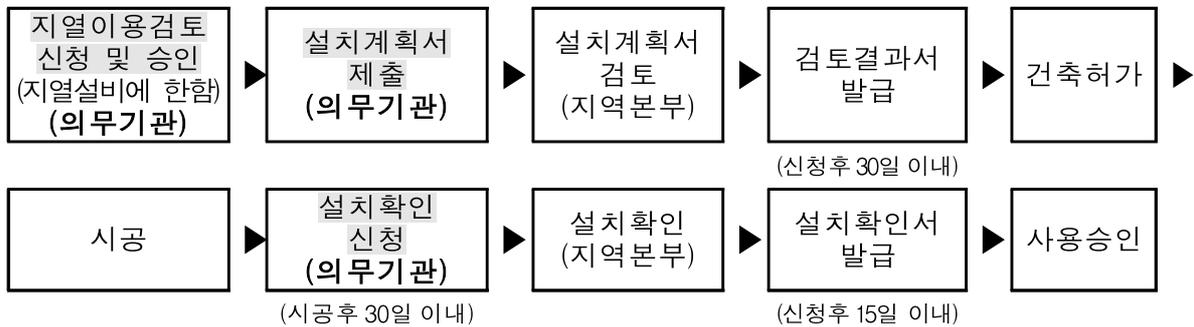
2

주요 내용

1] 관련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18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부 고시 제2016-249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센터 공고 제2018-5호)

2] 추진절차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산정기준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text{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 \text{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text{예상에너지사용량} \times 100$$

2) 예상 에너지사용량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text{예상에너지사용량} = \text{건축 연면적} \times \text{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 \times \text{지역계수}$$

3)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text{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text{예상에너지사용량} \times \text{해당연도별 공급의무비율(\%)}$$

4) 설치의무용량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text{설치의무용량} = \text{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text{원별 단위에너지생산량} / \text{원별 보정계수}$$

4 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 지역계수, 원별 단위에너지사용량 및 보정계수

< 건축물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 및 지역계수(고시 별표2) >

구분		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 (kWh/m ² ·yr)	구분	지역계수
공공용	교정 및 군사시설	392.07	서울	1.00
	방송통신시설	490.18	인천	0.97
	업무시설	371.66	경기	0.99
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412.03	강원 영서	1.00
	종교시설	257.49	강원 영동	0.97
	의료시설	643.52	대전	1.00
	교육연구시설	231.33	충북	1.00
	노유자시설	175.58	전북	1.04
	수련시설	231.33	충남·세종	0.99
	운동시설	235.42	광주	1.01
	묘지관련시설	234.99	대구	1.04
	관광휴게시설	437.08	부산	0.93
	장례식장	234.99	경남	1.00
상업용	판매 및 영업시설	408.45	울산	0.93
	운수시설	374.47	경북	0.98
	업무시설	374.47	전남	0.99
	숙박시설	526.55	제주	0.97
	위락시설	400.33		

* 건축물 용도별 보정계수는 2017년 4월 1일부터 폐지됨

< 원별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지침 별표10) >

신·재생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kWh/kWyr	1.56
	추적식	1,765		1.68
	BIPV	923		5.48
태양열	평판형	596	kWh/m ² ·yr	1.42
	단일진공관형	745		1.14
	이중진공관형	745		1.14
	공기식무창형	487		1.37
지열에너지	공기식유창형	557		2.57
	수직밀폐형	864	kWh/kWyr	1.09
	개방형	864		1.00
집광채광	프리즘	132	kWh/m ² ·yr	7.74
	광덕트	73		7.74
	실내루버형	184		2.77
연료전지	PEMFC	7,415	kWh/kWyr	2.84
수열에너지		864	kWh/kWyr	1.12
목재펠릿		322	kWh/kg·yr	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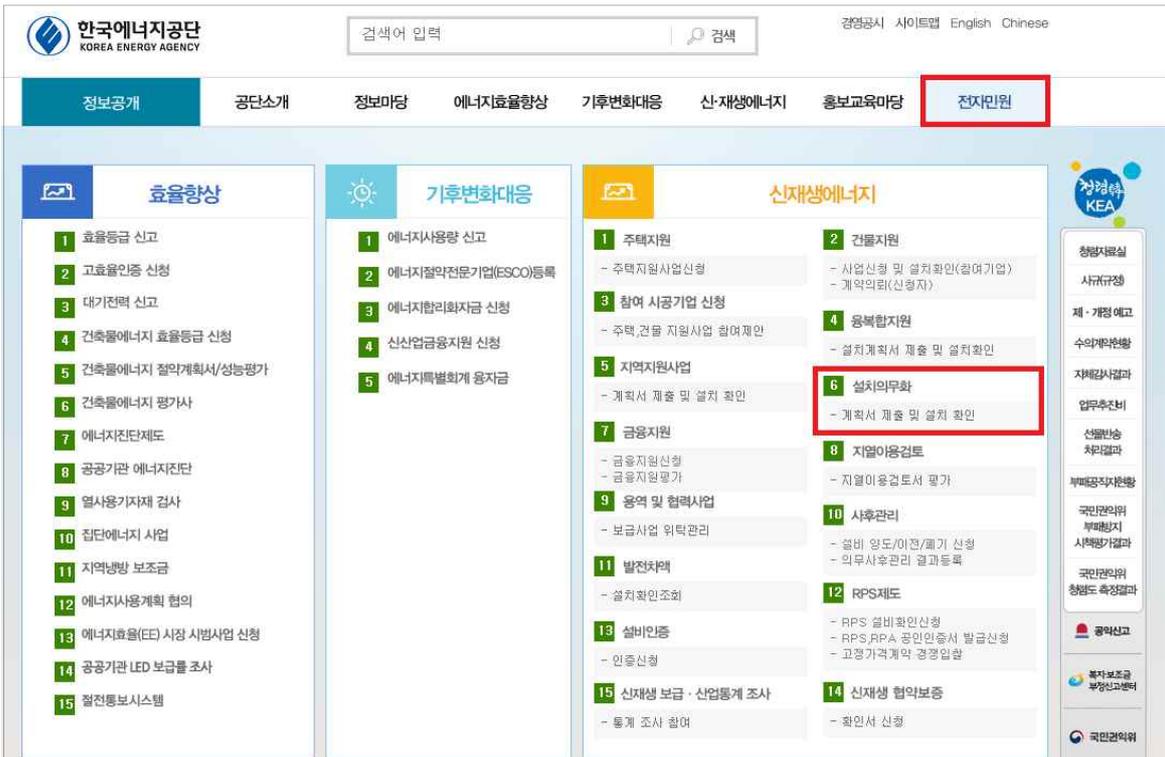
3

신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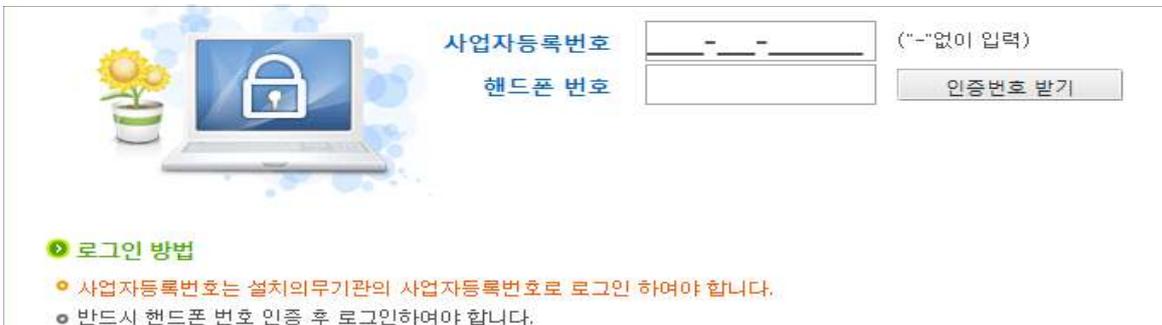
1 '설치계획(또는 면제) 신청서' 접수

※ 모든 계획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온라인)을 통해 접수 및 검토

1)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 신청자는 반드시 **설치의무 대상기관(건축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신청자 핸드폰번호를 입력 후 **본인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3) 신청서작성 및 조회

설치업무회 신청서 조회									
신청일자: 2004-01-01 ~ 2018-10-23		신청번호: <input type="text"/>		신청구분: 전체		진행상태: 전체			
건물명: <input type="text"/>		기관명: <input type="text"/>		건물주소: <input type="text"/>		검색 Excel			
신청번호	기관명	건물명	신청서구분	신청일자	최종수정일자	진행상태	확인번호	변경신상	지명 이용 검토서 목록 및 신청
201809130011	TEST	TEST	설치계획	2018-09-13	2018-09-13	작성	0102	변경	최초신청번호 201809130011
201809130012	TEST	TEST	설치계획	2018-09-13	2018-09-13	보완요청			201809130012
201809130013	TEST	TEST	설치계획	2018-09-13	2018-09-13	작성중			201809130013

- 신규신청의 경우 우측 상단의 **설치계획서 작성**을 클릭, 진행(작성 및 보완) 중인 경우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설치계획서 **신청번호(12자리)**를 클릭합니다.
- ☞ ‘신청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신청 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작성완료 후 반드시** 첨부서류탭 하단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완료하여야 합니다.
- 진행상태가 **‘보완요청’**인 경우, 신청번호를 클릭하여 화면을 떠온 후 **서류검토 탭**에서 보완요청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을 보완하여 재제출합니다.
- 진행상태가 **‘적정’**으로 계획서검토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주요 변경사항 발생할 경우** 해당 **신청번호 우측의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내용 작성 후 제출합니다.
(진행상태가 **작성중/보완요청**인 경우에만 작성된 내용을 수정·보완 할 수 있습니다.)

4) 용어설명

설치업무회 신청서 조회									
신청일자: 2004-01-01 ~ 2018-10-11		신청번호: <input type="text"/>		신청구분: 전체		진행상태: 전체			
건물명: <input type="text"/>		기관명: <input type="text"/>		건물주소: <input type="text"/>		검색 Excel			
신청번호	기관명	건물명	신청서구분	신청일자	최종수정일자	진행상태	확인번호	변경신상	최초신청번호
201809130011	TEST	TEST	설치계획	2018-09-13	2018-09-13	작성중			201809130011
201809130011	TEST	TEST	설치계획	2018-01-05	2018-02-22	신청			201809130011
201809130011	TEST	TEST	설치계획	2014-06-10	2014-06-10	보완요청			201809130011
201404030007	TEST	TEST	설치변경	2014-04-03	2014-04-25	신청			201404030007
201809130011	TEST	TEST	설치계획	2013-05-10	2014-04-02	결재진행중			201809130011
201809130011	TEST	TEST	설치계획	2011-12-05	2011-12-06	작성	0102	변경	201809130011

- **신청번호** : 설치계획서 작성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고유일련번호
- **기관명/건물명** : 기관명(건축주), 건물명(건축허가예정 건축물의 건물명)
- **신청구분** : 설치계획, 설치변경, 설치면제
- **신청일자** : 전자민원(온라인)을 통해 설치계획(또는 변경) 신청서 제출일자
(모든 신청서는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검토됨)
- **최종수정일자** : 계획서 보완요청 등으로 신청서를 재제출할 경우 최종 제출일자
- **진행상태**

작성중	계획서를 작성중인 상태로 신청자의 계획서 제출행위가 미완료된 상태 (작성내용 수정·보완 가능한 상태임)
신청	신청자가 계획서 작성완료 후 제출버튼을 눌러 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상태
보완요청	제출된 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작성내용이 미흡하여 보완을 요구한 상태 (작성내용 수정·보완 가능한 상태임)
결재진행중	계획서 검토완료 후 최종결재권자의 검토승인을 위한 결재대기중 상태
적정/부적정	계획서 검토완료 상태로, 검토결과서 발급(출력)이 가능함

- **확인번호** : 설치계획(또는 변경, 면제) 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서 통보 시 부여되는 고유번호
- **변경신청** : 계획서검토 완료된 건에 대하여 변경신청이 필요한 경우
 - ☞ 진행상태가 '**적정**'으로 계획서검토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주요 변경사항 발생할 경우** 해당 **신청번호** 우측의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내용 작성 후 제출
(동일 건에 대하여 최종승인이 완료된 신청번호의 우측에 버튼 생성됨)
- **최초신청번호** : 해당(동일) 건에 대하여 최초 접수한 신청서의 신청번호
(신규신청의 경우 최초신청번호가 동일하며, 변경신청의 경우 신규신청 시의 번호가 연동)

② '설치계획(또는 면제) 신청서' 검토

1) 설치계획서 검토기준

-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설치의무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 후 그 결과를 설치의무기관의 장에게 통보
- 설치계획서는 '**접수일자**' 기준으로 검토하며, 첨부서류 등 작성 내용이 미흡할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서류보완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검토사항**
 -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대상 건축물 부합 여부**
 - ②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산정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설비 **부합 여부 및 설비인증 만료 여부**
 - ③ 고시 제48조에 따른 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의 충족 여부**
- ※ 설치계획서에 대한 서류검토는 '19년도부터 **의무대상 건축물이 위치한 주소지의 해당 지역본부*에서 담당**
- * 서울, 경기, 인천, 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세종충북, 강원, 전북, 경남, 제주지역본부 등 12개 지사

2) 변경신청서 검토기준

- 기존의 검토승인 완료된 설치계획서 내용 중 연면적, 예상에너지 사용량, 설비용량, 신재생에너지생산량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청
 - 변경신청 시 의무비율의 경우 신규신청 시 승인받은 의무비율 적용이 유지되나, 설비(인증모델 등) 변경의 경우 반드시 접수일자기준 관련지침 상의 시공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함
 - ‘설비용량만 10%미만 증가’ 경우에 한하여 자체변경 가능함 (설치완료 후 10%미만 증가된 설치용량으로 설치확인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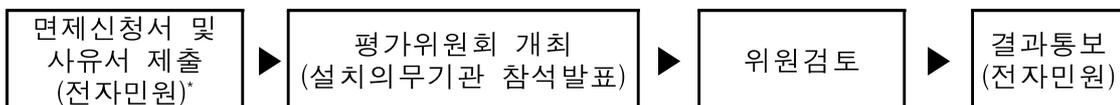
3) 면제신청서 검토기준

- 설치의무 면제대상 건축물 (산업부 고시 제46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센터의 장은 별도의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대상 건축물 여부를 확정한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주변시설의 안전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사용목적이 일반 건축물 용도와 다른 경우
3.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연속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4. 기타 입지조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설치면제 또는 조건부 면제가 타당하다고 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면제신청 진행절차



※ 온라인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 전자민원 → 설치의무화 → 면제신청서 제출

③ 설치확인 신청

※ 설치계획서 작성화면 우측 상단의 '설치확인' 탭에서 신청

-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설치계획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완료 후 30일 이내 설치확인 신청을 하여야 함

* 신재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 센터의 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설치확인 후 설치확인서 발급



※ 온라인신청 : 전자민원 → 설치의무화 → 해당 신청번호 클릭 → '설치확인' 탭 → 설치확인신청

4

FAQ

○ 설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하나요?

- ☞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신재생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받아야하며, 설치계획서 검토결과를 건축허가신청서에 반영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설치계획서 검토 소요기간은?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 작성내용 및 첨부서류 등 내용이 미흡할 경우 보완이 요청될 수 있으며, 서류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설치의무화 공급의무비율(%) 적용기준은?

-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의 관한 규정 제47조(설치계획서 검토기준)에 따라 설치계획서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전자민원을 통해 계획서를 제출(접수)한 일자(접수일)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 단, 기 승인완료된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최초 접수일자 기준의 의무비율 적용 유지

○ 의무대상이 되는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의 용도' 판단 기준은?

- ☞ 건축연면적이란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하며, 건축용도란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연면적에 대한 허가용도(주용도)를 말합니다.

<의무대상 연면적>

신축(또는 증축·개축)을 위해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1,000㎡ 이상 (대상여부 판단 시에는 주차장면적 포함하되, 예상에너지사용량 산정 시 제외)

<의무대상 용도>_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따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탁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장례시설

○ 동일대지 내 각기 다른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동별 연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하는지?

☞ 신재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의 연면적(1천㎡이상) 부합여부 판단 시 주용도의 부속용도도 포함이 되는지?

☞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제13호 각 목에 해당되는 용도로써,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쓰임에 따라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의 연면적(1천㎡이상) 부합여부 판단 시에는 건축허가 연면적 전체를 포함합니다.(단, 건축허가용도가 의무대상 건축물용도임을 가정)

○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의 건축물 용도 부합여부 판단 시, 주용도가 2가지 이상인 복합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 할 경우 대상연면적 포함기준?

ex) 업무시설(800㎡)과 근린생활시설(1,300㎡), 공동주택(1,000㎡) 등 2가지 이상의 용도를 갖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 주 용도가 2가지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진행 경우, 설치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 예시의 경우 전체 연면적은 1천㎡ 이상으로 연면적기준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설치의무 적용대상 용도가 아닌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을 제외하면 1천㎡에 미달됩니다.

따라서, 설치의무 적용대상 용도인 숙박시설의 연면적으로만 대상여부를 판단하여 1천㎡ 미만이므로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ex) 전체 연면적이 2,000㎡인 신축 건축물에 업무시설 용도가 800㎡, 판매시설이 800㎡, 창고시설이 400㎡일 경우 설치의무 대상 해당여부?

☞ 위의 경우, 의무대상용도에 해당하는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이 각기 800㎡로 개별적으로는 1천㎡ 이하라 할지라도 두 용도의 합이 1천㎡ 이상이기 때문에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에 해당됩니다.

< 추가해설 >

설치의무 적용대상 건축물용도와 연면적은 신재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용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되는 용도의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상에너지사용량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연면적에 대하여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되, 단 주 용도가 2가지 이상인 복합용도의 경우에는 해당용도별 연면적의 비율(전체 연면적 대비)만큼 나누어 각 용도별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의 관한 규정' [별표2]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공간이 부족할 경우 타 장소에 설치가능여부?

☞ 설치의무대상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를 위해 해당 건축물에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신재생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급되는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은 반드시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구조적 안전성 및 설치 여건 등 특수한 사정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경우 동일주소지 내 인근건축물에 설치 가능하나 반드시 의무대상 건축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정에 따라 면제신청도 가능하나, 이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진행됨)

○ BTL, BTO, BOT 등 민간투자사업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 여부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며, BTL, BTO, BOT 등 민간투자사업 및 기부채납 형식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와 같이 건축허가 전(설치계획서 제출시점)에 건축물의 소유권이 민간에 있는 경우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그 민간주체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2항에서 정하는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필요)

○ 기존설비를 활용하여 의무이행 가능한지 여부

☞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신재생설비를 활용한 의무이행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일정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를 위하여 해당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신재생설비는 반드시 해당 건축물에 의무비율 및 시공기준에 부합하는 신재생설비를 설치하여 의무대상 건축물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집단에너지이용과 신·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의 관계

☞ 「집단에너지사업법」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각각의 목적과 취지가 상이한 바, 집단에너지사용과 관련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적용 기준에 따라야합니다.

Ⅱ . 관련 규정

법 률	시 행 령
<p>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10.4.12.]</p>	<p>제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여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p>② 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되, 하나의 대지(垵地)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10.9.17.]</p> <p>제16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p> <p>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p>

법 른	시 행 령
	<p>1.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전문개정 2010.9.17.]</p> <p>제17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10.9.17.]</p> <p>제18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p> <p>①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한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10.9.17.]</p>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249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여 시행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사업별 시행기준

제7절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제44조(설치의무기관 및 설치여부 확인 등) ①설치의무기관은 영 제15조 제1항제1호 [별표 2]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이하 “공급의무 비율”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설치의무기관의 의무대상 건축물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한 후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그 중 최근 5년간 신축, 증축 또는 개축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여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의무기관에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출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예산서 등 증빙서류

2. 납입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서류
3. 기타 설치의무기관의 건축물이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45조(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설치의무기관의 장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설치의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검토서를 받은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건축허가신청서에 검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신청 시 제2항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에게 제2항에 따른 검토서 내용의 반영여부 등을 확인시켜야 한다.

제46조(설치의무 면제대상 건축물 등)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 괄호단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대상 건축물 여부를 확정한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주변시설의 안전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사용목적이 일반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경우
3.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연속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4. 기타 입지조건외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설치면제 또는 조건부 면제가 타당하다고 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설치의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제신청서(이하 “면제신청서”라 한다)를 건축허가 신청 전에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면제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제5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확정된 후 제1항의 신청자에게 확정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검토서를 받은 제1항의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제45조제3항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설치의무기관의 장은 건축허가권자에게 제3항에 따른 검토서 내용 등을 확인시켜야 한다.

제47조(설치계획서의 검토기준) 설치계획서는 접수일자 기준으로 검토하며,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기관은 건축허가일 기준으로 검토한다.

1.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상건축물 부합 여부
2.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산정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합 여부 및 설비인증 만료 여부
3. 제48조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충족 여부

제48조(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과 방법) 영 제15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 <개정 2016.12.28.>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text{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frac{\text{신·재생에너지 생산량}}{\text{예상 에너지사용량}} \times 100$$

<비고>

-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량 중 그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다.
- (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하여 연간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을 보정한 값이다.
- (3) 예상 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의 양이다.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예상 에너지사용량은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3항에 의함

2. 예상 에너지사용량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text{예상 에너지사용량} = \text{건축 연면적} \times \text{단위 에너지사용량} \times \text{지역계수}$$

<비고>

- (1) 연면적이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단,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 (2) 단위 에너지사용량이란 용도별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에너지의 양이다.
- (3) 지역계수란 지역별 기상조건을 고려한 계수이다.
- (4) 단위 에너지사용량 및 지역계수는 다음과 같다.

< 단위 에너지사용량 >			< 지역계수 >	
구분		단위 에너지사용량 (kWh/m ² · yr)	구분	지역계수
공공용	교정 및 군사시설	392.07	서울	1.00
	방송통신시설	490.18	인천	0.97
	업무시설	371.66	경기	0.99
문교 · 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412.03	강원 영서	1.00
	종교시설	257.49	강원 영동	0.97
	의료시설	643.52	대전	1.00
	교육연구시설	231.33	충북	1.00
	노유자시설	175.58	전북	1.04
	수련시설	231.33	충남·세종	0.99
	운동시설	235.42	광주	1.01
	묘지관련시설	234.99	대구	1.04
	관광휴게시설	437.08	부산	0.93
	장례식장	234.99	경남	1.00
	상업용	판매 및 영업시설	408.45	울산
운수시설		374.47	경북	0.98
업무시설		374.47	전남	0.99
숙박시설		526.55	제주	0.97
위락시설		400.33		

3. 신 ·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text{신 · 재생에너지 생산량} = \text{원별 설치규모} \times \text{단위 에너지생산량} \times \text{원별 보정계수}$$

<비고>

- (1) 원별 설치규모란 설치계획을 수립한 신 · 재생에너지원의 규모를 말한다.
- (2) 단위 에너지생산량이란 신 · 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설치규모에서 연간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이다.
- (3) 원별 보정계수란 신 · 재생에너지원별 연간 에너지생산량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이다.
- (4)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는 센터의 장이 정한다. 다만, 단위 에너지생산량이 현저히 낮은 신 · 재생에너지원의 보정계수는 다른 신 · 재생에너지원 보정계수의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8 - 5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제1항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8절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

제50조(설치계획서 제출 및 처리) ①설치의무기관의 장은 고시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58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시 제45조제2항에 따른 설치계획서 검토절차는 [별지 제58-1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검토절차」를 따른다.

③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설치계획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시 제47조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지 제59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검토결과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설치계획서의 내용 중 건축물 연면적, 예상에너지사용량, 설비용량 등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제4항과 관련하여 승인된 설치계획서 상의 설비용량 증가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설치계획서를 자체변경할 수 있다. 다만, 설치확인 신청시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센터의 장은 필요할 경우 설치의무기관의 장에게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제3장을 따른다.

제51조(설치의무 면제신청 및 처리) ①고시 제46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제 신청서(이하 “면제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60호 서식]에 의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면제신청서의 접수일부부터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지 제61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면제신청 검토결과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단위에너지 및 원별 보정계수) 고시 [별표 2]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 산정을 위한 단위에너지 및 원별 보정계수는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개정 2018.4.5.>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원별보정계수

신·재생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kWh/kW·yr	1.56
	추적식	1,765		1.68
	BIPV	923		5.48
태양열	평판형	596	kWh/m ² ·yr	1.42
	단일진공관형	745		1.14
	이중진공관형	745		1.14
	공기식무창형	487		1.37
	공기식유창형	557		2.57
지열에너지	수직밀폐형	864	kWh/kW·yr	1.09
	개방형	864		1.00
집광채광	프리즘	132	kWh/m ² ·yr	7.74
	광덕트	73		7.74
	실내루버형	184		2.77
연료전지	PEMFC	7,415	kWh/kW·yr	2.84
수열에너지		864	kWh/kW·yr	1.12
목재펠릿		322	kWh/kg·yr	0.52

주) 여기서 정해지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단위 에너지생산량과 원별 보정계수는 지침 제55조의 분야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정한다.

[별지제58호서식] ※ 반드시 전자민원시스템 출력버튼을 통해 출력 후 직인 득하여 첨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기관 개요	기관명 (건축주)			작성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기관형태	<input type="checkbox"/>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정부출연기관 <input type="checkbox"/> 정부출자기업체 <input type="checkbox"/> 기타법인				
건축 물 개요	건물명					
	건물 주소					
	건축물 형태	<input type="checkbox"/> 신축 <input type="checkbox"/> 증축 <input type="checkbox"/> 개축 <input type="checkbox"/> 복합			건축물 용도	
	건축 연면적	지상층 (m ²) 지하층 (m ²)	합 계 (m ²)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건축허가예정	년 월 일	착공예정	년 월 일	준공예정 년 월 일	
설비 개요	설치될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황	신·재생에너지원	설치형태	설치용량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kWh/yr)	
		참고용				
		총 계				
	설치 장소	※ 설치예정 위치(옥상, 지상 등)를 명기하고 해당 도면 첨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예상에너지사용량(A)	kWh/yr				
	신·재생에너지생산량(B)	kWh/yr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B/A*100)	예상에너지사용량의	%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_____		(대표) _____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직인)</div>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설치계획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설치계획서는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시스템 온라인을 통해 접수 및 검토)						

[별지제59호서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검토결과서					확인번호
기관명 (건축주)					사업등록번호
건축물 개요	건물명				
	건물 주소				
	건축물 형태	<input type="checkbox"/> 신축 <input type="checkbox"/> 증축 <input type="checkbox"/> 개축 <input type="checkbox"/> 복합	건축물 용도		
	건축연면적	지상층 (m ²) 지하층 (m ²)	합계 (m ²)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설비 개요	설치될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황	신·재생에너지원	설치형태	설치용량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kWh/yr)
		총 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예상에너지사용량(A)		kWh/yr		
	신·재생에너지 생산량(B)		kWh/yr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B/A*100)		예상에너지사용량의 %		
위와 같이 귀 기관이 제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검토의견					
※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연간에너지생산량, 이에 대한 공급의무비율 등은 귀 기관이 제시한 기준임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인) </div>					

